
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

본 매뉴얼은 단양관광공사 임직원, 이해관계자, 군민(이용객)들이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및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

단양관광공사
(경영지원팀)

1. 인권 및 인권경영

- 아래의 법규에서 인정하거나 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지라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
 -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
 -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각종 인권규범 및 인권선언 등에서 인장하는 권리
 -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에서 예시하는 권리
- 인권의 특성
 - 천부인권: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기 이전에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여 받는 권리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음
 - 보편성: 인종, 성별, 지위 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누리는 권리
 - 양도불가성: 인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
 - 불가분성: 인권은 포괄적·통합적인 하나의 권리로 세부적인 분류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불가능
 - 상호의존성: 어떠한 권리를 향유하고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른 권리도 향유 및 충족되어야 함
- 인권경영의 개념
 - 정의: 공사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
 - 정용범위
 - 임직원: 공사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(비정규직 포함)
 - 이해관계자: 법인(공법인·사법인), 자연인을 불문하고 공사의 경영 활동에 관해 직·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

2. 인권침해

□ 인권침해의 정의

-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행위
- 국가인권위원회 「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」
 - 인권침해: 「대한민국헌법」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
 - 차별행위: 「대한민국헌법」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

□ 인권침해 유형

-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
 - 성별, 연령, 성정체성, 결혼여부,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 - 종교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 - 사회적 신분, 학력, 장애, 가족상황,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 - 출신(지역·국가·민족), 인종,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-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
 - 사생활과 통신,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
 - 종교나 신념,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
 - 집회·결사의 자유,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
 -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
-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
 - 기합, 체벌, 가혹행위,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

- 폭언, 욕설,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
-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- 교육권·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
 -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 -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
-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침해
 -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-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
 - 사용자·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
-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
 - 사회·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

3. 인권침해 구제절차

□ 구제절차 정의

-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누구든지 외부기관 또는 내부(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)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

□ 구제절차 종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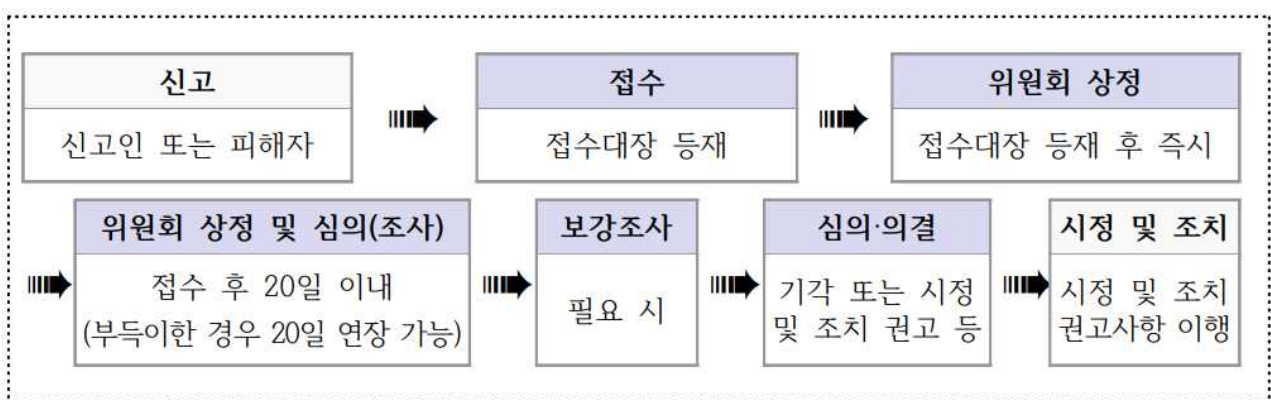
○ 내부 구제절차

- 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(인권경영 주관팀장)에게 신고
- 외부 구제절차에 비해 접근 용이,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 가능

○ 외부 구제절차

- 사법기관에 고소·고발, 국가인권위원회 진정,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신청
-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음, 장기간 소요 및 비용 발생

□ 구제절차 프로세서



○ 인권침해 신고

- 신고인: 피해자 또는 제3자(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)

- 신고인의 신분보장
 - 신고인, 피해자, 피해내용 등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
 - 신고에 따라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시행
 -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
- 신고방법: 방문접수, 전화, 팩스, 이메일

○ 인권침해사건 신고 접수

- 인권침해사건 접수대장 등재(인권경영 주관팀장)
- 접수대장 등재 후, 즉시 인권경영위원회 상정
- 각하할 수 있는 사건(단양관광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36조)

구 분	세부내용
제1호	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
제2호	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,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
제3호	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, 수사 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 이거나 종결된 경우
제4호	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
제5호	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

○ 시정 및 조치

-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
- 사장이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, 그 징계의 종류, 절차, 효력 등은

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
-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
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가능

4. 별지 서식(인권침해 신고서)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인권침해 신고서

신 고 자	성 명	소 속	직위(직급)
신 고 사 항			
피해일시 및 장소			
피침해자			
침해자			
피해내용			
년 월 일			
신고자		(서 명)	